더샵 트리센트(조합원 자격상실 세대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00-3384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1.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1.13.(금)**	**2026.11.23.(월)**	**2026.11.24.(화)**	**2026.11.25.(수)**	**2026.12.01.(화)**	**2026.12.04.(금)~ 2026.12.08.(화)**	**2026.12.13.(일)~ 2026.12.15.(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더샵트리센트.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자가(2025.11.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예)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해당 지역 신청 가능 /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 기타 지역 신청 가능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1.23.(월)	2026.11.24.(화)	2026.11.25.(수)	2026.12.01.(화)	2026.12.04.(금)~ 2026.12.08.(화)	2026.12.13.(일)~ 2026.12.15.(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남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금회 당첨자발표일(2026.12.01.)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과 - 37907호(2026.11.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3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5층 6개동 총 803세대 중 일반분양 103세대(조합원 자격 상실 세대분)**
[특별공급 60세대(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16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8세대, 신생아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63	01	059.5981	59A	59.5981	21.7934	81.3915	44.4778	125.8693	35.0959	58	6	6	9	1	4	6	32	26	1
	02	075.4145	75	75.4145	26.5421	101.9566	56.2815	158.2381	44.4098	25	3	3	4	1	2	3	16	9	3
	03	084.4817	84	84.4817	29.8096	114.2913	63.0482	177.3395	49.7492	20	2	2	3	1	2	2	12	8	1
	합 계									103	11	11	16	3	8	11	60	43	5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	75	84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1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	-	1
	중소기업 근로자		1	1	-	2
	장애인	부산광역시	1	1	1	3
	외항선원 근로자		1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	3	2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9	4	3	1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1	3
생애최초 특별공급			4	2	2	8
신생아 특별공급			6	3	2	11
합 계			32	16	12	6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소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2027-06-11	2027-06-11	2027-11-11	2028-04-11	2028-09-11	2029-02-11	입주지정일
059.5981	59A	101동 4,5호 102동 2,3,4,5호 103동 1,2호 104동 2,3호 106동 2,3호	1층	1	270,220,000	319,780,000	**590,000,000**	10,000,000	19,5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206,500,000
			2층	1	274,800,000	325,200,000	**600,000,000**	10,000,000	2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210,000,000
			3~5층	7	278,464,000	329,536,000	**608,000,000**	10,000,000	20,4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212,800,000
			6~9층	11	281,670,000	333,330,000	**615,000,000**	10,000,000	20,75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215,250,000
			10~19층	19	284,876,000	337,124,000	**622,000,000**	10,000,000	21,1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217,700,000
			20층 이상	19	287,624,000	340,376,000	**628,000,000**	10,000,000	21,4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219,800,000
075.4145	75	101동 1,3호 102동 1호 104동 1호 105동 2호 106동 1,4,5호	1층	1	327,012,000	386,988,000	**714,000,000**	10,000,000	25,7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249,900,000
			2층	3	332,050,000	392,950,000	**725,000,000**	10,000,000	26,25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253,750,000
			3~5층	3	336,172,000	397,828,000	**734,000,000**	10,000,000	26,7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256,900,000
			6~9층	3	340,294,000	402,706,000	**743,000,000**	10,000,000	27,15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260,050,000
			10~19층	10	344,416,000	407,584,000	**752,000,000**	10,000,000	27,6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263,200,000
			20층 이상	5	348,080,000	411,920,000	**760,000,000**	10,000,000	28,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266,000,000
084.4817	84	101동 2호 103동 3,4호 104동 4,5호 105동 1,3,4호	1층	1	367,774,000	435,226,000	**803,000,000**	10,000,000	30,15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281,050,000
			3~5층	4	376,934,000	446,066,000	**823,000,000**	10,000,000	31,15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288,050,000
			6~9층	1	381,056,000	450,944,000	**832,000,000**	10,000,000	31,6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291,200,000
			10~19층	6	385,178,000	455,822,000	**841,000,000**	10,000,000	32,05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294,350,000
			20층 이상	8	388,842,000	460,158,000	**849,000,000**	10,000,000	32,45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297,150,000

※ 중도금 1회(10%)와 2회(10%) 일자는 동일함(중도금은 2027.06.11. 1,2회차(20%) 동일 날짜에 기표)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품목 가격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td></tr>
</table>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외항선원 근로자** :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table>
<tr><td></td><td>■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td></tr>
</table>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table>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table>
<tr><td>-</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td></tr>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able></td></tr>
</table>

	(20%)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노부모부양	2026.11.23.(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더샵 트리센트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 -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2026.11.24.(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6.11.25.(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td><td colspan="2">-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td></tr>
<tr><td>공고단지
청약연습</td><td colspan="2">-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td></tr>
<tr><td>당첨자발표
서비스</td><td>청약홈</td><td>-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2.01.(화) ~ 2026.12.10.(목) (10일간)</td></tr>
</table>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2.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노부모부양	• 일시 : 2026.12.01.(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6.12.13.(일) ~ 2026.12.15.(화), 3일간 (10:00~17:00) • 장소 : '더샵 트리센트'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및 유의사항

구 분	선 정 방 법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 미달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별도 통지)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규제지역내 1순위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일정**

서류제출 및 심사기간	2026.12.04.(금) ~ 2026.12.08.(화) 10:00~16:00까지
대상자	특별공급, 일반공급(1, 2순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장소	더샵 트리센트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3.(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이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3.)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이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표1>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더샵 트리센트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상세(선택)발급(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상세(선택) 발급'으로 발급(세대주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 제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 (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상세 발급"으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	• 당사 견본주택 비치 [혼인신고일(7년 이내), 자녀수(태아 포함), 월평균소득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표2> 참조)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표4> 참조)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상세 발급"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표2> 참조)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3> 참조)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표4>참조)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표2> 참조)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기존주택 처분 서약서	청약자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표4>참조)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부양가족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표2>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① 재직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발급되지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5.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여부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표5>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더샵 트리센트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상세(선택)발급(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상세(선택) 발급'으로 발급- (세대주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장애인등록증	본인 및 세대원	• 청약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인 경우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님을 확인받는 경우 - 추첨제 당첨된자 중 우선공급(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으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광역시 적용)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가점산정 기준표	보인	• 신청 가점 확인(견본주택에 비치)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상세 발급"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상세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는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장소	계약기간	문의 전화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더샵 트리센트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	2026.12.13.(일)~2026.12.15.(화)	1600-3384
특별공급/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본인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구매 및 출력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 추가 서류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		상기 본인서류	계약자	• 상기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항목 전체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 본인의 인감도장
	○		신분증 및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대리인 인감도장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공급자/수분양자 각 1/2 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③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청약통장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양수 후 청약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공급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정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건축허가변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선택품목이 있을 경우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발코니 확장 등)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사업주체가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계약자와 매수자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새마을금고	9002-2088-3019-7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PF금융지사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홍길동 101동 1403호' → 홍길동1011403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을 위 지정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수납하며 이외에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가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청약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해약절차 진행 후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시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에 6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본 주택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시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 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 개시가 될 경우 입주 개시월 전월 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며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 개시월의 이자정산일 부터 완제시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공동육아시설, 경로당, 돌봄센터, 어린이집,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GX룸/강사실 포함), 사우나(목욕탕), 작은도서관(패밀리라이브러리), 키즈룸(키즈카페), 독서실(프라이빗스터디룸),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현재 인허가 도면상의 부대복리시설은 시설의 종류 및 배치가 변경될 예정으로 견본주택에 전시된 내용으로 시공되므로 견본주택 전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9 발코니 확장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19,700,000	1,970,000	17,730,000
75	24,700,000	2,470,000	22,230,000
84	27,700,000	2,770,000	24,930,000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새마을금고**	**9002-2088-3031-2**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PF금융지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고,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는 상기계좌로 납부하여 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501호 홍길동 → 1011501홍길동 / 101동 701호 홍길동 → 1010701홍길동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입금자명이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미납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기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위치, 확장면적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건축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 전기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분양)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으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 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침실, 거실, 주방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해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품목입니다.)

(1)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부가세포함)

약식표기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선택1	거실+침실1	4,360,000	436,000	3,924,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340,000	734,000	6,606,000	
75	선택1	거실+주방+침실1	5,940,000	594,000	5,346,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660,000	966,000	8,694,000	
84	선택1	거실+주방+침실1	6,550,000	655,000	5,895,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0,160,000	1,016,000	9,144,000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전 주택형	에코세이버 스탠다드형(제습 청정환기)	3,070,000	307,000	2,763,000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서류,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동안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납부일정 및 금액은 계약서 상 명시 예정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 냉매배관만 시공[안방, 거실]되며, 옵션 미선택시 입주자 부담으로 실외기 및 실내기를 설치하여야 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각 실내기 소요 용량 합산하여 제조사가 보증한 범위 내에 적합한 사양으로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기본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은폐, 매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불가함.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은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함.
- 에코세이버는 제습환기-시스템에어컨 자동 연동 운전을 통해 냉방에너지를 절감하는 제습환기청정시스템입니다. 유상옵션으로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과 자동 연동 운전이 가능하며,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는 에어컨과의 연동은 불가합니다.
- 에코세이버 유상옵션은 시스템에어컨(기본/전실) 유상옵션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프리미엄 보일러 유상옵션 선택 시 에코세이버는 외기·난방환수 온도 기반으로 보일러 공급 온도를 제어하여 난방에너지를 절감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 에코세이버(제습환기청정)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에 미디움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필터교체주기(연2회 교체 권장)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코세이버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및 침실(알파룸 제외) 시스템에어컨과 자동 연동 운전되며, 주방 시스템에어컨과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 에코세이버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 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에코세이버의 경우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는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당 1개가 제공되며, 주방에 4.3인치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 에코세이버의 설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에코세이버의 소모성 필터는 사용 시점 기준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교체를 권장해드리며 각 필터는 사용 환경에 따라 교체 및 세척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모성 필터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교체하여야 합니다.
- 에코세이버의 작동을 위한 통합 컨트롤러는 주방에 노출 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빌트인 가전

(단위: 원, 부가세포함)

품목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냉장고 FIT&MAX(LG)	3도어(냉장/냉동/김치)+ 수납장(인출형 선반) (냉동 BC1F4AA(GLASS)-베이지 냉장 BC1L4AA(GLASS)-베이지 김치 BC1K4AA(GLASS)-베이지)	59A	8,120,000	812,000	7,308,000	
		75	8,150,000	815,000	7,335,000	
		84	8,150,000	815,000	7,335,000	
식기세척기(LG)	DIE5PT	전 주택형	1,440,000	144,000	1,296,000	
전기오븐(LG)	MZ385EBT1		530,000	53,000	477,000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서류,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Fit&Max)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Fit&Max 선택시 도어 컬러선택은 불가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Fit&Max) 선택시 타입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냉장,냉동,김치냉장고) 및 가전,가구의 열림방향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Fit&Max) 선택시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Fit&Max) 미선택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수 있는 가구가 설치되며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기오븐 유상옵션 선택 시, 인덕션 하부에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여닫이도어가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현관중문

(단위: 원, 부가세포함)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전 주택형	현관중문(1Fix+2Sliding 수동) + 신발장 하부조명	1,700,000	170,000	1,530,000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서류,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문(현관중문, 올인원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옵션 선택 시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이 적용되며,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ON/OFF를 위한 동작감지센서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중문(현관중문, 올인원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주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프리미엄키친 (고급형 주방가구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디자인후드+고급수전 +주방 슬림형 라인매입조명)	10,160,000	1,016,000	9,144,000	평면 변화 없음
75		17,510,000	1,751,000	15,759,000	대면형 주방+우물천장/간접조명/포인트천장+ 다이닝장식장
84		18,190,000	1,819,000	16,371,000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2,460,000	246,000	2,214,000	기본형 주방일 경우 선택 가능
75		2,650,000	265,000	2,385,000	
84		2,770,000	277,000	2,493,000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서류,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타입(A,B)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시 "ㄷ"자 주방(전동 플랩 상부장, 여닫이 하부장)과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독립형 후드,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주방 슬림형 라인매입조명), 벽부형 주방 액세서리바, 고급 수전이 설치됩니다.
• 59타입(A,B) 프리미엄키친 옵션 미선택시 "ㄷ"자 주방(기본형 여닫이 상/하부장)과 벽체 타일, 엔지니어드스톤(기본) 상판, 침니형 후드, 더샵 빌트인 콘센트(기본형 주방등)가 시공됩니다.
• 75,84타입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시 알파룸 공간까지 주방/다이닝 공간이 확장되며, 전동 플랩 상부장, 여닫이 하부장,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아일랜드 하부장, 독립형 후드,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주방 슬림형 라인매입조명),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포인트천장, 벽부형 주방 액세서리바, 고급 수전, 다이닝 벽 디자인판넬, 다이닝 장식장이 적용된 대면형 주방으로 설치됩니다.
• 75,84타입 프리미엄키친 옵션 미선택시 "ㄷ"자 주방(기본형 여닫이 상/하부장)과 벽체 타일, 엔지니어드스톤(기본) 상판, 침니형 후드, 더샵 빌트인 콘센트(전열2구), 알파룸이 시공되며, 우물천장/간접조명/포인트천장, 벽 디자인판넬, 다이닝 장식장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프리미엄키친 옵션 또는 기본형 주방에서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주방 벽 엔지니어드스톤의 두께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벽 엔지니어드스톤의 두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75,84타입 프리미엄키친에 포함된 다이닝장식장(주방식장)의 가구 내부 및 오픈장 부위에 전열기기 설치 및 사용 시 가구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며,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키친에 포함된 독립형 후드의 색상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고급) 미선택 시, 기본형 주방 벽체는 국산타일, 상판은 엔지니어드스톤(기본)이 설치됩니다.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고급) 미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기본) 주방상판과 국산타일 벽체 마감이 적용되며, 상판과 타일이 접하는 부분에는 뒷턱 또는 뒷선반이 설치됩니다.

기본형/유상옵션형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상판 전면 두께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됩니다.

(5) 욕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프리미엄바스 (공용/부부)외산타일(600*600)+고급수전/도기	4,670,000	467,000	4,203,000	
75		4,780,000	478,000	4,302,000	
84	스타일링바스 (공용욕실 : 건식세면공간(포켓도어,수납장,타일 바닥재) + 내부 외산타일(600*600) + 고급수전/세면기 부부욕실 : 외산타일(600*600)+고급수전/도기	6,020,000	602,000	5,418,000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전 주택형	복합환풍기(공용욕실, 부부욕실)	1,460,000	146,000	1,314,000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서류,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타입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시 건식 세면 공간의 디자인 벽판넬 나누기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판넬 고정을 위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84타입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욕실사이즈, 욕실장의 형태와 구성, 양변기 위치, 욕실 악세사리 설치품목 및 위치, 욕실문 및 세면대의 형태, 바닥마감재(스타일링바스 건식세면공간 바닥 : 타일 / 케어룸 바닥 : 강마루)가 변경됩니다.
- 84타입 상부세대의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에 따라 배수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욕실 천장 또는 욕실 주변 천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84타입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건식 세면공간 바닥에는 별도의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84타입 스타일링바스 옵션 미선택 시 전실(기본형 케어룸)에는 강마루가 적용되며, 와이드 강마루 옵션 선택 시 해당 마감이 적용됩니다.
- 84타입 스타일링바스 옵션 미선택 시 전실(기본형 케어룸)과 복도 사이에는 여닫이 도어가 설치됩니다.
- 84타입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공용욕실에는 고급마감재(벽/바닥 포슬린타일, 세면 수전, 욕조 수전, 세면기)가 적용됩니다.
- 84타입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부부욕실에는 고급마감재(벽/바닥 포슬린타일, 세면 수전, 샤워수전, 코너선반, 세면기, 양변기)가 적용되며,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이 변경됩니다.
- 84타입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공용욕실 건식세면공간에는 언더볼 세면대가 설치됩니다.
- 59타입(A,B), 75타입 프리미엄바스 옵션 선택 시 공용욕실에는 벽/바닥 포슬린타일, 고급마감재(세면 수전, 욕조 수전, 세면기, 양변기)가 적용됩니다.
- 59타입(A,B), 75타입 프리미엄바스 옵션 선택 시 부부욕실에는 벽/바닥 포슬린타일, 고급마감재(세면 수전, 샤워수전, 세면기, 양변기)가 적용되며,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이 변경됩니다.
- 75타입 프리미엄바스 옵션 선택 시, 바닥 및 벽체의 포슬린타일은 84타입 옵션 마감재와 동일합니다.
- 선택옵션에 따라 천장, 방의 구조가 변경될 경우 천장의 환기디퓨져의 위치 및 개소는 이동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제조사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유상옵션 추가금액은 기본형 욕실팬 비용이 차감된 금액이며 기본 제공되는 환풍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1대당 1개의 리모컨이 지급되며 추가 리모컨은 제조사를 통해 개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6) 수납 특화

(단위: 원, 부가세포함)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올인원 드레스룸 (드레스룸/파우더 통합+AL슬라이딩도어+드레스룸제습기)	1,960,000	196,000	1,764,000	
75		1,960,000	196,000	1,764,000	
84		1,980,000	198,000	1,782,000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75	침실1(안방) 여닫이도어 붙박이장	2,240,000	224,000	2,016,000	
84		2,290,000	229,000	2,061,000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75,84	다용도실 시스템선반	670,000	67,000	603,000	

• 다용도실 시스템선반 선택 시, 손세탁볼 및 하부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서류,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올인원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도어는 안방과 드레스룸 사이에 AL슬라이딩도어로 시공되며 드레스룸 제습기가 설치됩니다.
• 올인원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내부 파우더 거울의 전원을 위한 전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올인원 드레스룸 옵션 미선택시 드레스룸/파우더장 분리형으로 시공되며 가구 수납 구성 및 가구 길이 등이 변경됩니다.
• 올인원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드레스룸제습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 전등 및 감지기 등의 부착물 위치 및 제품의 종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올인원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드레스룸제습기는,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제조사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올인원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드레스룸제습기는, 각 1대당 1개의 리모컨이 지급되며 추가 리모컨은 제조사를 통해 개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올인원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드레스룸제습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전등 및 감지기 등의 부착물 위치 및 제품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올인원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드레스룸제습기의 광촉매필터는 5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며 사용 방법에 따라 교체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올인원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는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길이가 상이하게 설치 됩니다. 또한 본공사 시 도어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올인원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는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실1(안방) 여닫이도어 붙박이장 선택시, 파우더장(기본형) 및 드레스룸 도어(기본형)의 마감재는 붙박이장 도어와 동일한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7) 거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디자인월 (거실 아트월 대형타일(600*1,200)+아트월 상부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등+거실후면/복도 디자인판넬+일부 픽처레일)	3,210,000	321,000	2,889,000	
75		3,650,000	365,000	3,285,000	
(프리미엄키친 선택시)_75		3,140,000	314,000	2,826,000	
84		3,680,000	368,000	3,312,000	
(프리미엄키친 선택시)_84		3,170,000	317,000	2,853,000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서류,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월 유상옵션 선택시 대형아트월 타일(600*1,200), 아트월 상부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디자인판넬, 픽처레일의 적용 범위는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월 유상옵션 선택 시 포슬린타일은 자재 특성상 밴딩(표면 휘어짐)이 있어,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재 이음매 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본공사시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월판넬은 본공사시 판넬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정을 위해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디자인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아트월은 거실 전면부위에 400*800 포슬린타일로 설치되며, 타일 장방향이 가로로 설치됩니다. 또한 거실 후면 및 복도 벽은 지정 거실 벽지로 마감되며, 아트월 상부 간접조명(등박스 포함), 픽처레일은 시공되지 않으니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분양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디자인월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후면/복도에 설치되는 디자인 판넬의 심재(코어)의 재료는 마그네슘보드 또는 락판넬이 사용됩니다.
- 디자인월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전면에 설치되는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은 소형액자 및 전시품을 위한 제품으로 대형 제품(벽걸이 TV등) 전시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액자걸이 와이어(개별 구매 필요)의 허용하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월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전면에 설치되는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은 몸체 1개소[길이 0.75~1.25m] 기준으로, 와이어 2개 이하(와이어당 허용 하중 3kg 이내)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 바닥 마감재

(단위: 원, 부가세포함)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전실 와이드 강마루	1,050,000	105,000	945,000	
75		1,350,000	135,000	1,215,000	
84		1,470,000	147,000	1,323,000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서류,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와이드 강마루 선택 시 패턴 및 칼라는 생산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적용 범위는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니,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와이드 강마루 선택 시 강마루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

(9)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루미나 2.0

(단위: 원, 부가세포함)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스마트감성조명 더샵루미나 2.0	3,600,000	360,000	3,240,000	
75		3,780,000	378,000	3,402,000	
84		4,120,000	412,000	3,708,000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루미나2.0 유상옵션 선택시거실 우물천정을 활용한 직간접 특화조명(하부직하조명[색온도, 밝기제어] + 상부 간접조명[점소등제어])이 설치되고,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룸및 일부침실은감성조명 옵션 제외, 옵션계약안내문 참조)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루미나2.0 거실 직간접 특화조명 하부 직하 감성조명[색온도, 밝기제어]은 월패드, 침실 감성조명(색온도, 밝기제어)은 침실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루미나2.0 거실우물천정직간접 특화조명 몸체연결부위 발생되는 이음새의 수량 및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복도등아트월면상부 간접조명 및 주방 우물천정 간접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루미나2.0 옵션에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10)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단위: 원, 부가세포함)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전타입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820,000	82,000	738,000	

• 스마트홈앤 시큐리티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제품 대신 지문인식 스마트 도어락, 안면인식 도어폰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원클릭스마트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스마트홈앤 시큐리티옵션 미선택시, 스마트 도어락(지문인식 기능 제외), 일반 도어폰(안면인식 기능 제외)이 제공되며, 원클릭스마트 스위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홈앤 시큐리티옵션 상품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원클릭스마트 스위치는 디자인 개발단계로 일부 디자인 및 사양(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실링팬	920,000	92,000	828,000	스마트감성조명 더샵루미나 2.0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75, 84		950,000	95,000	855,000	

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프리미엄 보일러	1,210,000	121,000	1,089,000	
75, 84		1,340,000	134,000	1,206,000	

• 실링팬은 스마트 감성 조명 루미나 2.0 유상옵션 선택시 선택 가능하며, 본공사 시 제조사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새마을금고	9002-2088-3031-2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PF금융지사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서류,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주방 아트월면 상부 LED 간접조명 및 주방 우물천정 간접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옵션과는 별도 옵션입니다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제품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제품의 세부내역은 계약 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11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2 단지여건 및 설계등의 유의사항 등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공 통	일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은 '더샵 트리센트'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펫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기도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 • 단지 주변에 위치한 각종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조망, 경관, 환경, 통행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장을 직접 확인 바람. • 본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배치 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반드시 문의 하여 확인 바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www.더샵트리센트.kr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 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 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I등급입니다. • 본 아파트는 인근 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사 훈련 및 작전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인허가	• 현장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단지는 2023년 05월 최초사업시행인가 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으로 적용함.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층 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주변도로 및 주차장 부지는 기부채납 부지로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 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착공 및 분양 이후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 시공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 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 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 및 공공시설(도로,구거 등)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 • 당 단지는 주변도로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본 시공시 구조물의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당 사업부지 외부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와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통신주는 사업주 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중화 될 계획이 없고 공사 이후에도 존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휀스설치	•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휀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구역경계	•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 인근 주민과 협의에 따라 대지 경계라인이 달라질 경우 근생시설 대지 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 구역 경계변경(지적측량 및 확정측량 등)으로 증감될 수 있다. 구역경계(지적측량 및 확정측량 등)에 따른 변경 면적은 세대별 대지 지분에 영향이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에서 증감한다.
	가구 및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 본 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 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75타입은 건립세대인 84타입과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 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공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됩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 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 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 특성상 본 공사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 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합니다. • 본 공사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실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오브제)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침실 내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방의 스위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바닥재인 강마루의 구성 부재 중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덕션 기본 적용으로 주방까지 별도의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의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전기차단 전용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59, 84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 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단지내 계단,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됨. •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현관문 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함. • 세대 현관문 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세대 시공과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됨.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점검구, D/A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 59, 84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 75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안방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 공사시 분합문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CG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경관조명, 외부색채,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 스위치/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 (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지	**단지계획**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임.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외부 입면, 단지 내 건축 옹벽은 일부 지정 석재질

		감도료/도장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야간경관심의(자문)에 따라 조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은 입체적 단지 조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102동 남동측, 104동과 105동 사이, 102동과 103동 사이, 106동 북남측에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치 예정 위치를 견본주택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옹벽 및 석축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해 변경하지 않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조경 공간에 D/A (설비 환기구) 의 노출이 있어 보행 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옥외공간 (수경시설 등) 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5동 인근 지상주차장이 계획되며, 차량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인근 세대 소음 피해 및 통행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동출입구, 식재, 차량 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시 단지 경사에 의한 레벨차, 바닥마감, 조경, 창호 형태, 입면 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당 단지는 확장시 거실과 침실의 창호가 유리난간이 적용된 이중창임으로 확장세대 거실과 침실로의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승강기는 동별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설치대수가 다르므로 승강기가 한 대만 설치된 라인은 이삿짐 이동시 승강기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화재 등의 비상시 비상차량동선의 기능도 겸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입주후 단지 운영에 따라 어린이집 차량, 우편물 차량, 이삿짐, 택배, 구급 차량 등이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1층에 각 동별로 1개소씩 설치되며,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집과 인접한 103동, 104동, 105동의 저층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될 수 있음. • 각 동의 지하층에는 제연휀룸이 계획됨으로 주동 1층 필로티내 제연휀룸 급기 DA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추후 실 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음. 각동 1층에는 DA (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또한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1동, 102동의 저층세대는 전면(동측)도로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옹벽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단지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시 소음 예측평가보고서에 따라 105동 하부 근생시설 옥상에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에 따라 최하층~6층세대 까지 환기, 채광,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범위에서 안방은 제외되어 일부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단지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5동 2,3호 저층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층 및 방음벽 설치로 인해 시선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104동,105동 부출입구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단지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소방 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옹벽 및 화계,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사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대지 레벨차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조망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단지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 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단지 내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며, 물놀이 시설이 아닌 관상용 시설이므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 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 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차량 출입구 중 일부 구간 포장이 블럭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진입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각 동별로 1개소 설치되며, 101,102동은 사이에 한 곳에 설치, 103동은 정면설치, 104,105동은 사이에 한 곳에 설치, 106동 배면에 설치됨.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일부 저층세대는 해당 동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보관소 외에 인접한 동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보관소가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양시 표현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 외부 조경 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보관소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각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보관소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음식물처리기는 중앙 처리 방식이며, 배출하기 위한 별도의 기계실이 지하에 설치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설 유지관리 기본비용이 입주자 관리비에 추가될 수 있음. • 세대 음식물 처리방식 외 공용 음식물 처리 및 배출시설은 101동, 105동, 106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3개소에만 설치되어 모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설치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음식물처리기는 사용 시 음식물 배출을 위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상태에 따라 투입구 주변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기계실은 각 동 지하층에 중간 기계실을 거쳐 106동 하부 지하주차장 3층 음식물탱크로 이송되며 음식물수거차량에 의해 수

		거됨. 음식물 이송시 배관에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3층 주차장 및 중간기계실에서 냄새가 날 수 있음. • 106동 옥탑 상단에는 음식물이송설비 환기배관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에 의한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6동 하부 맘스테이션 측면 옹벽에 음식물쓰레기 배출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며, 수거차량 등에 의핸 냄새 발생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는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 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시 인수 인계 예정이며, 인수 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2동, 104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는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안테나 및 중계기와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용 중계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패스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 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원패스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 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102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있으며, 운전시 운전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84타입 거실 창호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 계획에 따라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반사 등에 의 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설치됨. • 지하주차장, 필로티, 가정용 보일러 하부, 옥상 소화용 물탱크 주변 배관 및 외기에 노출되는 일부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전기 비용은 공용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단지 동측편에 가스 인입용 정압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부지는 도시가스 운영업체(SK E&S, 사업자 변경시 변경된 사업자)에게 무상임대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가스 정압실의 크기, 구조 및 위치는 가스공사 등 관계청의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어린이집 옥상에 관리를 위한 인원이 접근 가능하여 인근(103동, 104동, 105동)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각 동 옥상층에는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 공사시 위치 및 개소(부지 내,외부 유출입구 등)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옥상에 소화용수 보관을 위한 옥상 물탱크실(옥상수조)이 설치되며, 현장 여건과 소방 협의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최상층에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D·A(급기 및 배기 시설)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악취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음식물처리기는 중앙 처리 방식이며, 배출하기 위한 별도의 기계실이 지하에 설치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설 유지관리 기본비용이 입주자 관리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옥상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 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및 공청안테나, 피뢰침, 측격뢰, 중계기, 무선통신 보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티하우스 등의 조경 시설물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 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조경공간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입구	• 단지 차량 주출입구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104동, 105동과 106동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 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차량 주출입구 외 별도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는 총 2개소가 설치되며 단지 동측 10M 도로변과 단지 북측 에 위치함. 단지 북측에 위치한 출입구는 단지계획상 차량 출구 전용으로서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함.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부설주차장은 단지 주출입구 측에 별도 계획되어 있음. • 주동 필로티 계획은 전동 1층 일부 세대에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필로티의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필로티가 계획된 동은 주동 출입구 위치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 출입구의 내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 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설비 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할 수 있음.
	아파트 주동	• 주동 기준층 엘리베이터홀에는 채광을 위한 채광창이 설치되며, 코어 형태에 따라 크기 및 형태는 상이함. 공용부 창호 계획은 본 시공시 달라질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구간에는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별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동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터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레벨차이에 따른 외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수직 이동 동선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절, 품귀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됨.(단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음.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단지의 경사도에 따라 P1과 P2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음, P1구역은 101,102,103동이 공유하며 P2구역은 104,105,106동이

		공유함. 지하주차장의 층수는 P1,P2의 구분에 따라 층수가 각가 지하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차구역의 분리에 따라 P1과 P2는 차량동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101,102,103동의 주민이 P2에 주차하거나 104,105,106동의 주민이 P1에 주차 할 경우 세대로 진입하는 보행동선이 길어져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주출입구의 지하진입층은 지하1층이며 지하1층 주차장의 경우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 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차량 주출입구 부근과 지상 부출입구에는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로 입.출차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 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경우 레벨차로 인하여 각 주동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인허가 도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 을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공간은 동별 주차 대수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관련도면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 장애인 주차 폭 3.3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 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 음식물이송설비 기계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휀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에는 제습기가 설치되며 제습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장면은 일반 주차장과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기기의 설치,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대복리 시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본 공사시 위치가 바뀔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 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지하2층에 경로당, 공동육아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104동, 105동과 인접하여 어린이집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 음. • 104동, 105동 동측 지하1~지하2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지상 계단실 및 승강기 이동동선 계획에 따라 인접한 세대에서 소음, 빛공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집, 피트니스, 작은도서관(패밀리라이브러리),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됨.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지자체와 협약 체결 사항이므로, 입주자와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함.) •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로 제공된 CG, 모형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 일부만 제공됨. • 각 부대복리시설의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음.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 공용면적에 분배되었음. •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은「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및 기타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공통사항**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 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마감 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 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 폭의 안목치수가 4.5m 일때, 거실 아트월 타일, 타일 부착 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시 실측 치수는 해당 자재 및 부착 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 자재별 상이할 수 있음. •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반자높이 2%이내)에서 커튼 박스의 높이가 조절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커튼 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84타입 거실 창호에 설치된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시스템으로 인해 84타입은 거실 커튼박스 사이즈가 다른 타입과 상이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님. •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 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 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 공될 수 있음.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함.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 시공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 설치시 마감재별 두께 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 난방 공간임.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 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음.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 기구의 종류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전 타입은 실외기실에 피난용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1층 및 필로티 상부층 제외),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개폐 방향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층변화 세대 발코니 측 우수입상관 설치를 위해 벽체 마감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실외기실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음.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 / 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또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표준실험동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사후확인제도, `22.8.4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건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의 확인 방법 준용)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실외기 및 전열교환기 외 피난동선에 방해가 되는 다른 물품을 적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시 물걸레 등으로 건식 청소를 해야 하며 물을 뿌려서 하는 습식 청소 등으로 하부층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차수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있어 개폐시 해당세대와 하부세대에 경보 및 월패드에 연동되며 하부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음. • 다용도실 내 세탁기 및 보일러가 설치되는 단의 높이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제공품목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 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 홍보 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 현관 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 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구공사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주방가구,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및 마감자재는 세대 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시 동등 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하부장에 음식물이송설비 장비 및 배관의 설치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하부장 개방시 음식물이송설비 배관이 노출되어 보일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 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 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팬트리의 유무, 크기 및 제공 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 평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창호공사	•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음. • 각 세대 거실 및 안방 발코니 외부 창호는 유리 난간 일체형 창호가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침실의 창호는 이중창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색상, 손잡이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는 외부 단창 및 이중창 분합창이 설치되며, 인허가 진행 사항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실 시공시 성능 확보를 위해 외부창호 및 실외기 루버창 규격 변경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전기/설비	•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 바닥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주방 및 욕실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실외기실에 설치됨. •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음. • 냉장고 급수용 공 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 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 •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 방지 열선(카바형)이 설치됨. • 동별 외부 가스 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 카바가 설치됨. 단 수평배관은 제외하고 수직배관에만 설치됨. • 소방 법규에 따라 쿡탑용 자동식 소화기 및 관련 기기류가 렌지후드 덕트 내부에 설치되며 소화기 유지 관리를 위해 덕트의 탈착이 필요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의 실외기 가동시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져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침실 내부 (시야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체 감지기는 1,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주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함.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임. • 거실에는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 전력차단, 난방온도 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음. • 호실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음. • 인덕션 전기 쿡탑 용량은 3kW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의 부담임. • 장식장 및 가구에 설치되는 인테리어조명, 욕실 환풍기는 일괄 소등 기능에서 제외되나, 타입별 전원회로의 차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옵션에 따라 세대에 적용되는 전원 구성이 추가 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이 간섭될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 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보일러 및 욕실 환기팬의 위치 및 사양은 실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우.오수 배관, 바닥 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타입(거실, 안방)에 설치되며 에어컨의 연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연결용 매립박스와 커버가 시공됨.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임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기본형 환기장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환기장치의 설치 위치 및 환기 디퓨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 환기장치는 본 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됨.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 타입 침실 커튼박스 길이 및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환기장치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 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환기장치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 스위치 상부에 설치 예정이며, 본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 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본 공사시 욕실 천장 내부에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단위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 분배기 및 음식 탈수기, 음식물 이송설비 및 기타 옵션에 따른 추가 장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주변 천장에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작동시 모터의 성능 관련 흡입력과 모터 소음은 비례하므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개별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시공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 온도조절기가 삭제될 수 있으며, 거실 또는 인근 침실과 연동되어 작동됩니다. • 드레스룸에는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안방)과 연동되어 난방이 공급됩니다. • 배수 드레인, 선홈통, 각종 배관 등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구 수량이 추가되거나 사양,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천장,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환기 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을 위해 장비와 덕트가 노출되거나 확장형 다용도실인 경우는 천장마감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오배수관,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의 해당 위치 천장내에 설치되며 상층 세대 사용시 생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세대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급수 급탕 분배기는 당해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에 2개의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난방온수 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난방 및 온수 공급을 위한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사용시 보일러 가동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일러 가동 특성상 수전에서 온수가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가변형 벽체 여부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제어구획, 스프링클러헤드와 환기 디퓨저의 배치와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호스 내 고인 물은 퇴수시켜 주십시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설비 제품(환기장치, 욕실휀, 보일러, 렌지후드 등)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 되지 않는 세대의 경우에는, 주방 빌트인 콘센트가 제공 되지 않습니다. • 안방 발코니에는 전동형 빨래 건조대가 설치 되어, 별도의 조명 기구는 설치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방화문에 설치되는 스마트 도어락은 디자인 개발단계로 일부 디자인 및 사양(라이팅 색상, 밝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환풍기는 일괄소등 기능에서 제외되고, 주방 및 일반 가구에 설치 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타입별 전원회로의 차이로 일괄소등 기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합니다.) •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 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동현관 자동 문열림 서비스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스마트폰의 운영시스템에서 백그라운드 동작 중인 앱을 임의로 중지시킬 경우 사용자가 앱을 다시 시작하여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습니다.(단일인식 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여부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는 미제공되며, 외부 플랫폼의 음성인식기기와 연동하기 위한 플랫폼이 제공됩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실행을 통한 세대 디지털 도어락의 문열림 기능은 불가합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단지 홈페이지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무상기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 전환시 플랫폼 운영업체 정책에 따릅니다. 또한 운영업체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 장애인용 월패드 점자 커버 및 점자 스마트 스위치는 입주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장애인등록증 지참) - 장애인용 스마트홈 상품의 디자인, GUI 등은 개발 및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플랫폼 연동 - 카카오,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플랫폼과의 연동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연동시 제공되는 기능은 각 플랫폼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플랫폼 운영업체에 따라 제공 기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연동을 위한 환경 및 기능의 종류는 각 플랫폼 운영업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 플랫폼과의 연동은 입주일로부터 3년(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경우 1년)간 무상이나 각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무상기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금 주체는 각 플랫폼 운영사임) - 각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유상 전환시 플랫폼 운영업체 정책에 따릅니다. - 각 플랫폼 연동서비스는 플랫폼 운영업체의 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 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이앤씨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제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쉼표(국민DR) 서비스 단지 입주민이 참여 가능한 에너지쉼표(국민DR) 서비스는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 제도로, 전력거래소/수요관리사업자/정보제공사업자의 시스템 연계로 제공 및 운영되며, 각 운영사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및 실외기실	• 다용도실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실외기실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이,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 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하층 세대 실외기실의 경우 외벽에서 가스 배관이 인입되기에 입상만 서는 다른 세대와 미관상 차이가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안방 또는 침실 전면 비확장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와 스위치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 구간의 바닥단차 형태, 적용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의 에어컨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제품 선정 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실외기를 2대 이상 설치 시 전기 용량이나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장비 소손 등이 발생)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덕트는 노출 시공(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 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의 손잡이의 방향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실외기실 공간 면적이 상이하므로 입주 후 사용 예정인 실외기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실외기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내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도 없어야 합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인입을 위한 날개벽이 계획되어 견본주택과 다르게 창호 위치가 날개벽만큼 이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의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함.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가전기기는 전시품목이므로 실 시공시 제공되지 않음.
기 타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분양상담 관련	•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 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공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무관함. 1. 프리미엄 보장, 추가 할인, 계약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 행위

		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 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 4.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 약정행위

13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에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하거나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을 경우에는 사전 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사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내란, 외환, 계엄, 천재지변,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입주지연 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 부정입주를 통한 상행위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전기, 수도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50% 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입주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주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업주체는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관련 용역계약에 의거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학교 배정 관련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배치기준에 따라 초등학생은 신연초등학교로 배치 가능하고, 중학교는 대연중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대수 : 총 973대 (공동주택 966대, 근린생활시설 7대)
※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9의2)

구분		유효높이(M)	출입구높이(M)
주차장(P1,P2)	지하1층	2.7	4.0/ 3.1
	지하2층	2.3	-
	지하3층	2.3	2.5

■ 내진 성능 및 능력

내진 등급
I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 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가정용 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6-101-0010200 호	₩46,387,9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타내용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문현마루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 청 자 :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
3.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34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고체음(드륨,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토·성토량(방류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인증품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저탄용가능자원의 보급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우물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지전거주차장 및 지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분양·유지관리 분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관련조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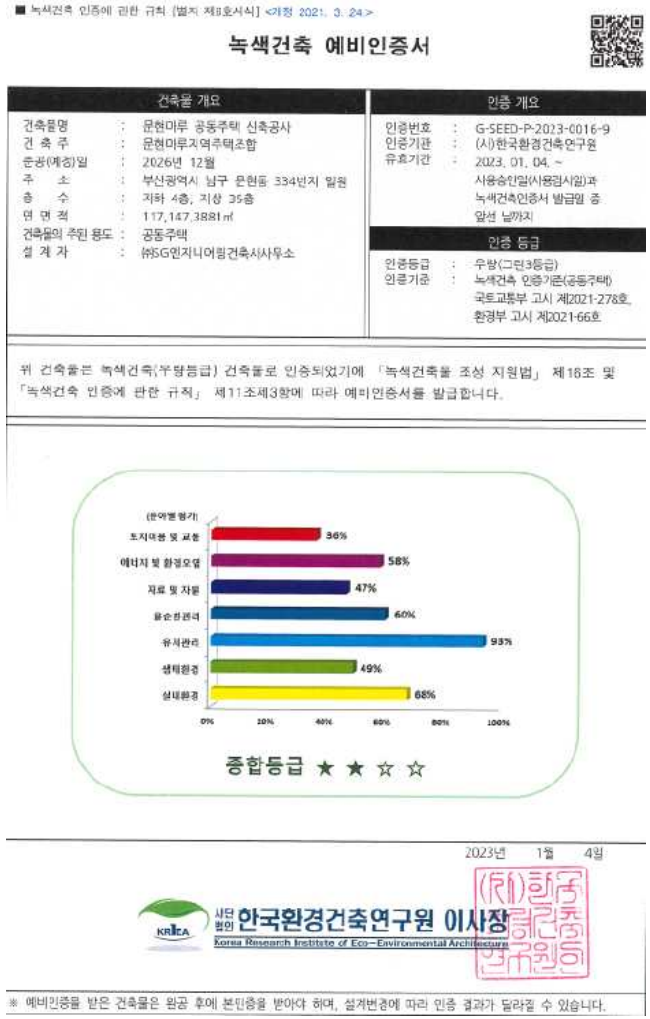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문현마루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G-SEED-P-2023-0016-9
건 축 주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	인증기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2026년 12월	유효기간	2023. 01. 04.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34번지 일원		
층 수	지하 4층, 지상 35층		
면 적	117,147.3881㎡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 계 자	㈜SG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량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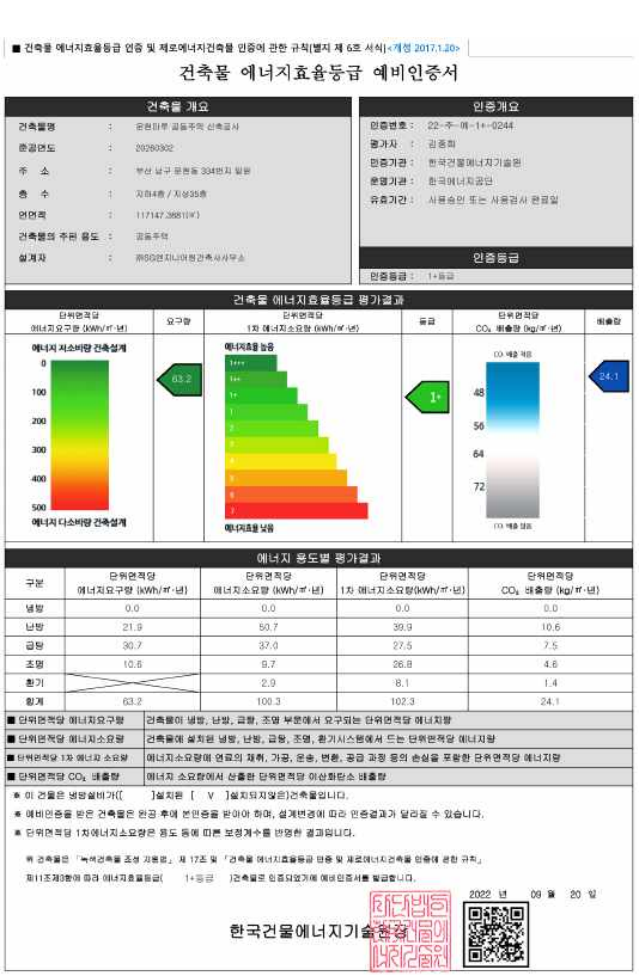
2023년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문현마루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22-주-예-1+-0244
준공년도	20260302	평가자	김종희
주 소	부산 남구 문현동 334번지 일원	인증기관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 수	지하4층 / 지상35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117147.3881㎡)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SG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1.9	50.7	39.9	10.6
급탕	30.7	37.0	27.5	7.5
조명	10.6	9.7	26.8	4.6
환기		2.9	8.1	1.4
합계	63.2	100.3	102.3	24.1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상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 년 09 월 20 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 VAT 별도)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상 호	㈜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무소	㈜한국전설엔지니어링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무소	㈜배정기술단
금 액	3,318,659,000	869,163,636	968,285,700	495,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자금관리
상 호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	㈜포스코이앤씨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로 139-30(문현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4, 15층 (초량동 부산사옥)
사업자등록번호	241-82-00010	506-81-02280	107-85-28892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견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만차 시 주차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홈페이지: https://www.더샵트리센트.kr**
■ **견본주택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
■ **분양문의: 1600-3384**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